 <b>환경부</b>	<b>보 토 자 료</b>		보도시점	자료배포일	매수
			3.12(수) <small>초간부터</small> <small>보도시</small> <small>출시명기</small>	'08.3	8
담당 부서	환경전략실 화학물질과	정선화 과장/ 유호 서기관·장일석 사무관 02-509-7982			

## 중소기업 REACH 사전 등록을 위한 1:1 컨설팅 실시

- ◆ EU, 초강력 화학물질 규제법인 REACH 시행('07.6)으로 초기 당면 과제인 사전등록('08.6.1~12.1) 대응 못하면 유럽으로의 수출 곤란
- ◆ 환경부, 중소기업의 REACH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전국 순회 REACH 컨설팅(1:1상담) 및 세미나」 실시 (중기청 합동, '08.3.12~3.21(5회), 5개 도시)

□ 유럽연합(EU)의 **新화학물질관리제도(REACH)**가 2007년 6월 시행됨에 따라 EU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이 초기 당면과제인 사전등록('08.6.1~12.1)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EU로의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 REACH(Regulation on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 EU내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산업계의 위해성 입증 책임을 의무화하는 제도로 화학물질(혼합물내 물질, 완제품내 물질 포함)을 제조하여 EU로 수출 (1톤이상/년/물질)하는 국내 기업은 사전등록·등록·신고·허가 등의 REACH 규제 대응 필수

○ 사전등록은 EU내 동일한 물질 제조자 또는 수입자(유일대리인)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등록한 자는 등록서류 공동 준비에 따른 비용 절감 및 등록유예 혜택(최소 3.5년, 최대 11년)을 받을 수 있다.

- 사전등록을 못할 경우 당장 '08.12.1월부터 제품 수출 이전에 등록을 하여야 하나 과도한 시험비용 발생, 준비기간 촉박 등으로 사실상 수출 불가능

- 환경부는 우리나라 화학물질 관리 주무부서로서 국내 기업이 강력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REACH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REACH 대응 추진기획단”을 발족('06.9)하고,
  - 그동안 REACH 제도 분석, 도움말센터(Helpdesk) 운영, 다각적 홍보·교육 및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옴으로써 REACH와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이러한 노력의 결과, 설문조사에서 국내 기업의 ‘REACH 인식도’는 상당히 향상(1차('06.11) 33%→ 5차('07.11) 95%)되었지만, ‘사전등록을 문제없이 할 수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46%('07.11)에 불과하여 정부의 REACH 사전등록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인력, 재정, 관리능력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은 독자적, 적극적 대응의지가 부족하여 REACH 대응 애로
  
- 이에 따라 환경부는 금년 6월부터 시작되는 사전등록에 국내 중소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08.3.12~3.21일 동안 안산 등 5개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REACH 컨설팅(1:1 상담) 및 세미나』를 실시한다.
  - 대다수 중소기업의 REACH 대응상 애로사항인 등록대상 물질 확인, 유일대리인 선임 등에 대하여 문제점, 궁금증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REACH 서비스기관과 기업간 일대일 상담 실시
  - 아울러 아직도 REACH를 잘 모르는 중소기업이 다수 있음을 감안, REACH 제도 및 사전등록 방법 등에 대한 세미나를 병행 추진

- 환경부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국내 기업이 REACH 사전등록 대응을 제대로 못하여 무역장벽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REACH 사전등록 대응이 필요한 기업의 현황 파악, 대응능력 제고 등 전수 관리
- 제품내 사전등록 대상 물질 확인, 비즈니스 이슈 컨설팅(등록주체 결정, 기업기밀 보호), 유일대리인 서비스 등에 대한 One-Stop Service 지원체계 구축 등

### 〈 참고 : REACH 시행의 의의 〉

- ▶ REACH는 EU 모든 회원국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최상위의 법률(regulation)로서, EU의 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
- ▶ 새로 개발되는 신규물질 뿐 아니라 그동안 자유롭게 사용해 온 기존물질까지도 물질 제조자가 위해성을 입증해야 생산 가능
  - 기존에 유통되어 온 물질이라 하더라도 위해성이 확인된다면 시장에서 과감히 퇴출 및 대체물질 개발 의무화
- ▶ ‘No Data, No Market’ : 위해성 정보의 생산·등록 주체가 국가가 아닌 물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물질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업 스스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시장 출시 원천 차단
- ▶ REACH 이행 주체는 EU내 물질 제조자 또는 수입자이나 수입업자와 수출업자의 거래관계에 의해 수출기업이 수입자의 REACH 의무 이행을 적극 지원하지 않으면 수출은 사실상 불가능 (수입자의 거래선 전환 등)

- 붙임 : 1. 전국 순회 REACH 컨설팅 계획  
2. REACH 제도 개요

**對 EU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전국 순회 REACH 컨설팅(일대일 상담) 및 세미나』 개최계획**

◆ EU의 REACH 제도의 사전등록('08.6~12) 임박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중기청과 합동으로 「전국 순회 REACH 컨설팅(1:1 상담)」 추진

- 일시 및 장소 : '08.3.12~3.21(5회), 안산 등 5개 도시
- 내용 : REACH 컨설팅(1:1상담) + 세미나
- 참여 컨설팅기관 : (주)에코프론티어 등 약 10개

**1. 추진 배경**

- EU의 「新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시행('07.6)으로 화학물질(혼합물, 완제품 내 물질 포함)을 제조하여 직·간접적으로 EU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해당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을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등록해야 함
  - ※ 주요 절차: 사전등록('08.6~12) → 물질정보교환포럼('08.6~'18.6) → 등록('08~'18)
  - ※ 기업의 등록기한 유예 및 비용절감과 척추동물의 반복적 시험 방지를 위해 '사전등록' 및 '물질정보교환포럼' 도입
  - ※ 등록기한은 제조·수입량과 물질 특성에 따라 3단계로 차등 적용('10년, '13년, '18년)
- 국내 기업이 당면과제인 REACH 사전등록('08.6.1~12.1)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등록유예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 수출 애로 발생
- 사전등록을 위한 '제품내 사전등록 대상 물질 확인', '유일대리인 선임' 등은 현재 다수 기업의 현안 사항
-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REACH 인식도가 낮으면서 인력, 재정 능력 등도 열악하여 대응이 훨씬 어려운 형편
- ⇒ 중소기업의 REACH 인식도를 높이고, 동시에 개별 업체의 대응상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국 순회 REACH 컨설팅(1:1 상담) 및 세미나" 개최

## 2. 추진 개요

### □ 추진방향

-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REACH 사전등록을 지원하기 위하여 REACH 컨설팅기관과의 일대일 상담
  - 중소기업이 REACH 제도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세미나 병행 실시

### □ 행사개요

- 주 최 : 환경부, 중소기업청
- 후 원 :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 일 시 : '08. 3. 12(수)~3. 20(목), 13:00~18:00
- 장 소 : 안산 상공회의소 등 전국 5개 도시
- 참석대상 : 對 EU 수출 국내 약 2,400개 중소기업
- 참여 컨설팅기관 : (주)에코프론티어 등 약 10개 기관

구 분	행 사 내 용		비 고
13:00~13:30	참가자 등록		
13:30~13:40	인사말		환경부/중기청
13:40~14:00	정부의 REACH 지원정책 소개		중기청
14:00~14:30	국내 REACH 컨설팅업체 소개		환경부 및 컨설팅기관
14:40~15:30	REACH 제도 설명	기업 : 컨설팅업체 1:1 개별 상담	
15:30~16:30	전략적 REACH 대응 방안		
16:40~18:00	질의 응답(Q&A)		

## □ 지역별 행사 일정(안)

날 짜	장 소	참석 지역	비고
3.12(수)	안산 상공회의소 4층 대회의실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519-1)	서울, 인천, 경기, 강원	
3.13(목)	여수 상공회의소 2층 회의실 (전남 여수시 서시장로 111)	광주, 전남	
3.14(금)	대전 상공회의소 2층 대회의실 (대전시 서구 둔산2동 1133)	대전, 충남, 충북, 전북	
3.19(수)	울산 상공회의소 6층 2회의실 (울산시 남구 신정3동 589-1)	부산, 울산, 경남	
3.20(목)	구미 상공회의소 1층 중회의실 (경북 구미시 송정동 454)	대구, 경북	

## 3. 기대효과

- REACH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가이드 제시
- 중소기업과 컨설팅업체의 개별상담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당면한 애로사항 해소

## 붙임 2

## REACH 제도 개요

□ EU는 건강·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산업계의 위해성 입증 책임을 의무화하는 REACH 제도 시행('07.6~)

※ REACH; Regulation for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화학물질을 등록·평가·허가·제한하는 제도)

○ 주요 절차 : 사전등록('08.6~'12) → 물질정보교환포럼('08.6~'18.6) → 등록('08~'18)

※ 기업의 등록기한 유예 및 비용절감과 척추동물의 반복적 시험방지를 위해 '사전등록' 및 '물질정보교환포럼' 도입

※ 등록기한은 제조·수입량과 물질 특성에 따라 3단계로 차등 적용('10년, '13년, '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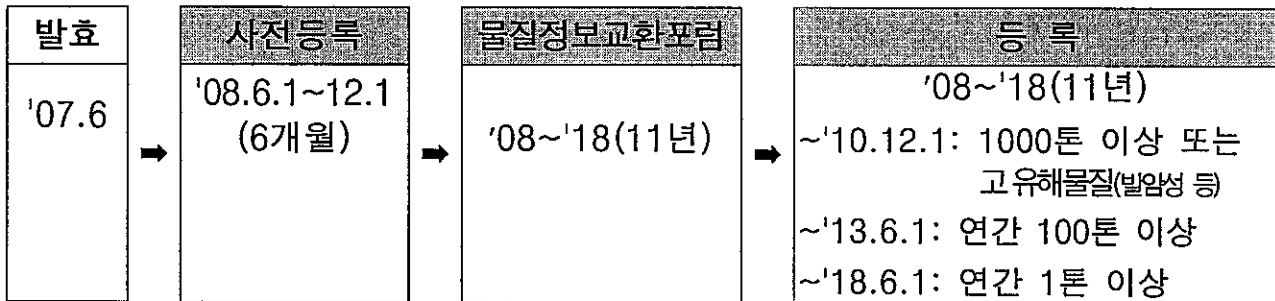
○ 등록된 위해성정보의 평가결과 확인된 고유해물질(발암성, 생식독성, 잔류성 등)에 대하여는 허가·제한 등을 통하여 사용 규제 및 대체물질 개발 유도

< EU의 REACH 도입 전후의 화학물질관리 변화 >

	REACH 시행 전('81~'07)	REACH 시행 후('07.6~)
대상 화학물질	-EU내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10kg/년 이상) ※혼합물에 함유된 신규화학물질도 해당 ※'81년 이전부터 EU에 유통되온 기존화학물질(약10만종)에 대하여는 규제 부재	-'81년 이전부터 EU에 유통된 기존화학물질(1톤/년 이상) -REACH 시행 후 EU내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1톤/년 이상) ※혼합물, 완제품에 함유된 기존화학물질도 해당
주요 규제내용	-인체, 생태에 대한 위해성정보 등을 신고한 후 시장출시 허용	-인체, 생태에 대한 위해성정보 등을 등록 - 고유해물질(발암성, 생식독성, 잔류성 등)은 용도별 허가를 받은 후 사용 ※허가제도 도입으로 대체물질 개발 유도
등록(신고) 주체	-EU내 제조·수입자(신규화학물질)	-EU내 제조·수입자(신규 및 기존화학물질) ※국내 수출기업은 수입자 또는 유알대리인 통해 등록
등록방법	-개별 등록	-동일물질 제조·수입자간 공동등록
등록기관	-EU 회원국 주무당국	-유럽화학물질청(ECHA) *'07.6월 개청

## 【첨부 : (사전)등록 세부내용】

### ◆ 등록단계



### ◆ 사전등록

- ▶ 등록정보 : 물질명, 등록예정자 정보, 예상등록시한 등
- ▶ 등록자 : EU내 물질 제조자 또는 수입자(유일대리인)
- ▶ 목적 : 잠재적 등록대상 물질 및 제조/수입자 파악
- ▶ 효과 : 1)최대 11년간 등록유예 가능, 2)예비등록자간 물질정보교환포럼 참여를 통한 기존 시험자료 공유 및 시험자료 공동생산 등 비용효과적 등록 준비

### ◆ 물질정보교환포럼(SIEF) 참여

- ▶ 참여방법 : 사전등록자는 Pre-SIEF에서 물질동질성 확인 후 SIEF에 자동 가입
- ▶ 특징 : 1개 물질 = 1개 SIEF, 하나의 등록서류 공동제출(one Joint Submission)
- ▶ 목적
  - 기존 시험자료 공유(척추동물 시험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한 번의 시험만 실시 후 자료를 공유토록 범으로 의무화)
  - 해당 물질에 대한 분류 및 표시에 대한 의견 일치

### ◆ 등록

- ▶ 등록서류 : 1)기술서류(수입자 정보, 물질정보/용도/분류표시, 연구요약문, 노출정보 등), 2)화학물질안전성보고서(인체·환경유해성 평가, 노출평가, 위해도 결정 등)
- ▶ 등록기한 : 수입량 및 물질 특성에 따라 3.5년, 6년, 11년 이내로 구분
- ▶ 등록자 : EU내 물질 제조자 또는 수입자(유일대리인)
- ▶ 등록 이후 : 등록서류 제출일로부터 3주 이내에 ECHA로부터 반대가 없으면 제조 또는 수입 가능